

● 제287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6. 20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**【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의안번호 653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안 자 : 이정인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
- 나. 제 안 일 : 2019. 5. 21.
- 다. 회 부 일 : 2019. 5. 24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”로 제명을 변경함.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장애정도로 수정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제2항, 제4조~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애등급 개편 취지를 실현하고자 제안됐음.

2 ‘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’을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’으로 변경(안 제2조제1호)

-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「장애인복지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‘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’을 위한 것으로,
- 기존의 ‘장애등급’을 폐지하고 ‘장애정도’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.
-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1~3등급은 ‘심한 장애’로, 4~6등급은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로 장애정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, 향후 지방세·사용료 감면 또는 장애인 대상 각종 보조·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시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해 맞춤 지원을 할 예정임.
- 따라서 기존의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의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.
- 「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 역시 ‘중증장애의원’을 ‘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, 개정된 상위법령의 장애정도 기준을 적용해
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’으로 변경하려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됨.

3

‘중증장애의원’을 ‘장애가 있는 의원’으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3조제2항, 제4조~제7조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는 ‘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’을 ‘중증장애인’으로 줄여 칭하고 이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).
- 현행 조례에서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(심한 장애)를 가진 의원을 ‘중증장애의원’으로 정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 인력과 보조서비스를 제공 중임.
- 이와 관련해 장애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각종 법적 장치와 제도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‘중증장애’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‘중증장애’ 단어를 ‘장애’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

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과 하위법령 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될 예정인바, 이를 조례에 반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

등급제 개편 취지를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적법한 조치로 판단됨.

- 아울러 ‘중증장애’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조례 제명을 비롯해 ‘중증장애’ 단어를 ‘장애’로 변경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